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차선도색 제거 공사비 설계반영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남도

내 용

충청남도(○○○○사업소)에서는 2017. 5. 22. ○○○도 ○○시 ○구 ○○로 000에 있는 (주)○○ (대표자 ○○○)와 2개사¹⁾와 국지도00호선 ‘○○~○○IC간 도로건설공사’를 공사부기금액 24,179,085,000원으로 도급계약하고 같은 해 5. 29. 착공하여 2023. 4. 27. 준공 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에 따라 차선도색 제거 5,220m²가 반영되어 있다.

「지자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공사 설계의 변경) 제5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 담당자는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특정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1) 충청남도 ○○시 ○○대로 0000, 4층에 있는 ○○종합건설(주) (대표자 ○○○), 충청남도 ○○군 ○○읍 ○○로 000-0에 있는 ○○종합건설(주) (대표자 ○○○)

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충청남도(○○○○사업소)에서는 기존 2차로를 확장하지 않고 시설
개량만 하는 공사 구간 중 기존도로를 그대로 사용하는 구간에는 차선도색을 제
거할 필요가 없는데도, 기존도로를 시설개량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국지도
00호선 ‘○○~○○IC 도로건설공사’의 측점 0+340~1+120 구간 780m에 차선도
색 제거 물량 396m²를 반영하고 있어 차선도색 제거 공사비 13,000,000원 상당을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지사는

[시정] 기존도로를 그대로 사용하는 구간에 반영되어 있는 차선도색 제거 물량
396m²를 삭제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하여 공사비 13,000,000원 상당을 감액하시기
바랍니다.